

예산총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40,291,065	40,208,732
일반회계	1,146,927,347	34,407,820
특별회계	193,363,718	5,800,912
공기업특별회계	146,914,291	4,407,4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3,534,135	2,206,02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3,380,156	2,201,405
기타특별회계	46,449,427	1,393,483
주택사업특별회계	46,000	1,380
수질개선특별회계	1,798,814	53,96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766,933	233,008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260,000	607,800
교통사업특별회계	14,373,680	431,210
대지보상특별회계	1,500,000	45,000

제 2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와 같다.

제 6 조 2016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11,46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6년도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6,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